

## 오픈뱅킹공동업무 금융정보 조회 약관 (기업고객용)

2024.12.26 제정

### 제 1 조 (약관의 적용)

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이용기관 서비스를 통해 한국씨티은행(이하 "은행"이라 한다)에 개설된 계좌의 금융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임의단체(이하 "기업고객"이라 한다)와 오픈뱅킹공동업무 참가기관인 은행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.

### 제 2 조 (용어의 정의)

- ① "오픈뱅킹공동업무"란 이용기관과 참가기관이 디지털금융 서비스를 원활하게 개발하고, 제공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참가기관의 핵심 금융서비스를 표준화된 API 형태로 운영·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.
- ② "이용기관"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승인을 받아 금융결제원(이하 "결제원")과 오픈뱅킹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를 말합니다.
- ③ "참가기관"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에 참가하는 결제원의 사원, 준사원 및 특별참가기관을 말합니다.
- ④ "금융정보 조회"란 기업고객이 이용기관의 서비스를 통해 제 6 조에서 명시하는 기업고객 본인명의 계좌의 금융정보조회 요청을 한 경우 은행이 해당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.
- ⑤ "오픈뱅킹중계센터"란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구축하고 운영하며, 참가기관과 이용기관을 서로 중계하는 곳으로 결제원이 담당합니다.

### 제 3 조 (약관의 변경)

- ① 은행은 본 약관의 내용을 기업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은행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기업고객에게 통지합니다.
- ② 은행은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, 약관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「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」의 내용을 준용합니다.

### 제 4 조 (약관적용의 우선순위)

- ① 금융정보 조회에는 이 약관 외에도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되며,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.
-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,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.

### 제 5 조 (금융정보조회 대상 계좌신청)

- ① 기업고객이 이용기관 서비스를 통해 은행에 개설된 본인명의 계좌의 금융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은행의 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 등 은행이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채널에서 금융정보 조회 대상 계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- ② 은행은 기업고객에 대한 본인 확인 및 신청권한 확인 후 신청결과를 기록합니다.
- ③ 기업고객은 본인의 정보보호를 위해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용기관 서비스를 통해 제 4 조에서 명시하는 금융정보조회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 해당 기간내에 금융정보조회 이용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, 은행은 금융정보조회 대상 계좌 신청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### 제 6 조 (금융정보조회 이용신청)

- ① 기업고객이 본인명의 계좌의 금융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채널에서 금융정보조회 이용 신청을 합니다. 신청 정보는 은행으로 전달됩니다.

- ② 기업고객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서면(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), OTP 발생기인증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금융정보조회 동의방법으로 금융정보조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- ③ 오픈뱅킹중계센터는 기업고객의 금융정보조회 신청시 기업고객이 신청한 실계좌번호를 가상의 계좌번호 (이하 "핀테크이용번호"라 한다)로 변경하여 이용기관에 제공합니다.
- ④ 기업고객은 본인의 정보를 보호받고 관리하기 위해 금융정보조회 이용 신청을 1 년 단위로 재신청하여야 합니다.
- ⑤ 은행은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전자금융거래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업고객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합니다.

#### 제 7 조 (금융정보조회 이용시간)

금융정보 조회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하루 중 이용시간은 00 시 10 분부터 23 시 50 분까지로 합니다.

#### 제 8 조 (금융정보 종류)

은행에서 제공하는 금융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
- ① 잔액조회 : 기업고객 본인명의 계좌에 대한 실시간 잔액 조회
- ② 거래내역조회 : 기업고객 본인명의 계좌에 대한 실시간 거래내역(거래일시, 거래점명, 거래금액, 거래 후 잔액, 통장인자내용) 조회

#### 제 9 조 (금융정보제공 및 금융정보 제공사실 통보)

- ① 기업고객이 이용기관 서비스를 통해 은행으로 금융정보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별도의 통지 없이 기업고객의 금융정보 내역을 오픈뱅킹중계센터로 통지하며, 오픈뱅킹중계센터는 해당 내역을 이용기관으로 통지합니다.

-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4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은행은 기업고객이 이용기관 서비스를 통해 은행에 등록된 연락처로 기업고객의 금융정보 제공사실을 서면(전자문서 포함)으로 통보합니다.
- ③ 기업고객은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용기관 서비스를 통해 은행에 등록된 연락처를 변경하여야 합니다.
- ④ 은행은 기업고객의 편익을 위해 금융정보 제공사실을 최대 1 년 이내 단위로 기업고객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.

#### 제 10 조 (금융정보조회 중단)

- ① 은행은 오픈뱅킹공동업무 관련 시스템의 장애 및 유지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융정보조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.
- ② 제 8 조 ①항에 따라 금융정보조회를 중단하는 경우 은행은 사전에 공지합니다. 다만, 불가피하게 사전 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은 이를 사후 공지할 수 있습니다.

#### 제 11 조 (금융정보조회 해지)

- ① 기업고객은 금융정보조회 해지를 이용기관 서비스 채널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② 은행은 기업고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기업고객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금융정보조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거나 관련 법규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최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  - 1. 기업고객이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
  - 2. 1 년 이상 이용기관의 조회요청이 없는 경우

#### 제 12 조 (면책 사항)

이 약관의 면책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.

**제 13 조 (관할 법원)**

이 약관에 따른 금융정보 조회와 관련하여 은행과 기업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
**부 칙 (2024.12.26)**

이 약관은 2024. 12. 26일부터 시행합니다.